

## 요약

IFRS17 시행으로 선임계리사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한 제도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됨. 해외 사례에 기반하여 개선된 제도는 선임계리사를 ‘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검증과 확인’ 역할에서 ‘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총괄’ 역할로 확대한 것이 주된 특징임. 선임계리사에게 실질적인 대표계리사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

-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 및 복잡성이 증가하여 선임계리사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됨
  - IFRS17의 보험부채는 예상 보험수익인 보험계약마진 표시로 인해 중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계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부채를 평가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함
  - 보험부채를 보험회사 내부에서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져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한 제도가 마련됨
- 본고에서는 해외 선임계리사제도를 살펴보고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통해 국내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진단함
- 영국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는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계리 업무 외에 경영 자문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대표계리사, 이익배당계리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
  - Solvency II 적용 여부<sup>1)</sup>와 사업모형에 따라 계리사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
    - 계리사는 ① Solvency II 적용회사의 장기 사업 대표계리사(Chief Actuary) ② 소형 보험회사 대표계리사(Small Insurer Chief Actuary) ③ 이익배당 계리사(With-profit Actuary) ④ Solvency II 비적용 회사의 적정성 검증 계리사(Appropriate Actuary) ⑤ 장기보험사업 회사의 감사 계리사(Reviewing Actuary)로 구분됨<sup>2)</sup>
- 미국은 선임계리사 제도가 1980년 후반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산 및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독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가격산정, 위험관리 등은 대표계리사에 의해 주로 수행됨
  - 1980년대 부적절한 요율 설정, 잉여금 부족, 자산 과대평가 등으로 다수의 미국 보험회사들이 파산<sup>3)</sup>한 후 자산 적

1) 보험회사의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에서 재보험 및 SPV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이 2,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SolvencyII를 적용하지 않음

2)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(2017), “APS L1: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ife assurance actuaries”

정성 및 보험부채의 충분성 판단을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가 도입되었음

- 선임계리사는 매년 정기 보고서 작성 시 자산의 현금흐름 분석 등을 통한 자산적정성 분석, 책임준비금 산정 및 법령 준수 등 부채 적정성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독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함
- 대표계리사(Chief Actuary)는 가격산정, 부채평가, 위험관리 등 사내 계리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고위 경영진 또는 고위 경영진에 보고하는 중간 임원의 위치를 가짐

○ 캐나다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1991년 보험업법 개정 시 기업지배구조에 추가하여 계리사 선임, 역할 및 의무를 제시하고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<sup>4)</sup>을 제시하고 있음

- 보험업법 개정 시 기업지배구조 부분에 선임계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
  - 이사회는 계리사를 선임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CEO, COO, CFO는 계리사로 선임될 수 없으나 CFO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였고 해임, 직무 종료 등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
- 선임계리사는 보험부채평가, 주주 및 계약자 총회 3주전 부채평가 보고서 제출, 회계감사위원회에 재무상황 보고, 배당관련 사항 이사회 보고 등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함

○ 호주는 1995년에 선임계리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로 부채평가에 대한 승인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, 2001년부터 종합적인 재무상태보고서와 자본적정성에 관해 자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됨

- 생명보험법(Life Insurance Act 1995)에서 선임계리사와 보험회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건전성기준(CPS 520 Fit and Proper)에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부여함
- 2019년 선임계리사의 역할, 권한, 의무 등을 강화한 새로운 건전성 기준서(CPS 320 Actuarial and Related Matters)를 발표함

○ 국내는 선임계리사 제도가 200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‘보험부채에 대한 검증 및 확인’으로 역할이 제한되었음

- 1962년 제정된 보험업법의 보험계리사 제도<sup>5)</sup>에서 선임계리사 제도의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보험계리사는 예정기 초율, 해약환급금, 책임준비금 등 ‘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’에서 정한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
- 2003년 8월 30일 선임계리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제도 도입 초기 선임계리사의 주된 역할은 책임준비금 감사기능으로 제한<sup>6)</sup>되었음

3) A.M. Best(1992), “Best’s Insolvency Study : life/health insurers, 1976-1991”

4) OSFI(2012), “Guideline, Appointed Actuary: Legal Requirements, Qualifications and Peer Review”; OSFI(2018), “Guideline, Corporate Governance”

5) 제80조 (보험계리인) ①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시켜야 한다. ② 전항의 보험계리인의 자격, 직무, 선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. ③ 재무부장관은 보험계리인이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

6) 제181조(보험계리)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(이하 “선임계리사”라 한다)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84조 (선임계리사의 의무 등)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선임계리사 업무 정의뿐만 아니라 시행령<sup>7)</sup>에서 금지행위, 자격요건,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관련 기준도 신설되었음
- 해외 사례에 기반하여 개선된 선임계리사 제도는 20년만에 이루어진 큰 폭의 개선으로 ‘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’하는 역할에서 ‘계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’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
- 해외의 경우 ‘보험부채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을 검증’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하며 계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계리사 또는 대표계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    - 영국, 캐나다, 호주는 국내와 동일하게 IFRS17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반회계(US-GAAP)에서 IFRS17과 유사한 시가방식 보험회계인 LDTI(Long-Duration Targeted Improvement)를 적용함
  -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에서 계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
    - 기존 업무인 기초서류의 적정성, 책임준비금,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외에 계리적 최적 가정의 검증, 확인에 관한 사항<sup>8)</sup>이 신설됨
  - 업무의 책임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업무,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한하고, 시행령에 규정된 임면절차, 자격요건, 독립성 보장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
  - 선임계리사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지원조직 최소 인력을 확대하고,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지원조직에 보험계리사 또는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등 지원조직 인력의 자격 요건<sup>9)</sup>을 강화하며, 보수교육 이수<sup>10)</sup>가 의무화됨
  - 한편, 입법 예고 시 포함되었던 선임계리사의 임원선임, 내부선임, 3년 임기 명시, 선·해임 시 이사회 의결 요건 강화, 이사회 참석 의무화, 보수체계 개편 등이 입법기관과 협의 중 제외되어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
- 제도 변화는 선임계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대표계리사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,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
- 선임계리사의 업무 확대는 우리나라 선임계리사의 위상, 권한, 업무 등이 해외의 대표계리사와 유사하게 강화<sup>11)</sup>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리업무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졌음
    - 전문성은 업무 경력 외에 논문 작성, 강의, 세미나 발표, TF 참여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임
  - 전문가 집단인 선임계리사 협의회 등에서는 실무표준 작성을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
    - 유럽계리사회(AAE)에서는 IFRS17의 경우 원칙중심의 표준이므로 보험회사 간 가정과 방법론에서 상당한 해석의 여지와 불일치를 남길 수 있어 계리사에 의한 표준화된 방법론과 계리적 원칙 사용을 제안함<sup>12)</sup>
  -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

7) 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(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), 제95조(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), 제96조(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)  
 8)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(보험계리사 등의 업무)  
 9)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 2(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)  
 10) 보험업 감독규정 제9-11조(선임계리사 보조인력)  
 11) 송상욱(2023), 「2023년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」, 한국보험계리사회 NewsLetter  
 12) AAE(2020), "Roles of Actuaries in relation to IFRS17", AAE Discussion Paper